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이 기술검토 신청 시 제출서류에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추가하는 규정 신설(안 제36조 제1항)
- 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의 자동차 제원 통보 시 제출서류에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를 추가하는 규정 신설(안 제39조 제1항 및 제105조 제1항)
- 다. 부품제작자 등록 시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과 관련된 서류 제출 의무 면제(안 제40조의5 제1항)
- 라.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대상·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40조의17 신설)
- 마.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기준 마련(안 제40조의18 신설)
- 바.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및 안전성능시험의 절차 신설(안 제40조의

19 신설)

- 사.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0 신설)
- 아.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1 신설)
- 자.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대상 구체화(안 제40조의22 신설)
- 차.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4 0조의23 신설)
- 카.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의 기준 신설(안 제40조의24 신설)
- 타.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절차 신설(안 제40조의25 신설)
- 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핵심장치등의 안전 성인증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150조)
- 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비치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서의 교부를 추가(안 제15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영 제8조의6의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3.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별지 제26 호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영 제8조의6의 경우 에 한한다)
- 4.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제40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서류"를 각각 "서류(영 제8조의2제14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장의2에 제40조의17부터 제40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7(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0조의7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구동축전지(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셀 제작자
 - 나. 셀 형태
 - 다. 셀 주요워료
 - 라. 셀 크기(mm)
 - 마. 셀 용량(Ah)
- 2. 구동축전지(팩)의 전기규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정격 전압(V)
 - 나. 작동 전압(V)
 - 다. 정격 용량(Ah)
 - 라. 최대 전류(A)
- 3. 열관리 형식
- 4. 전자적 제어 조건
- ②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핵심장치 또는 부품(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일반사항(팩)을 제외한 제원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변경인증의 경우: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안전성인증서
- 2. 변경신고 및 제4항의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 보서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변경인증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제5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등 적합여부 확인의 방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①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 1.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 2.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및 안전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라 핵심장치등에 대하여 자동차안전기준등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를 작성 하고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첨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신청 시 법 제30조의8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이하 "지정기관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이하 "자기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안전성능시 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40조의21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시 험시설 확인서 및 자기안전성능시험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접수, 제40조의17

에 따른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제40조의20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 적합여부 확인과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및 인증서의 교부 등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인증 및 안전성 능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4호의9 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만 부여하고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만 부여하고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만부여하고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40조의19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는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 번호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등) ① 법 제30조의8제3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갈음하여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자기안전성능시험을 최초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

- 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시설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이 별표 5의10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안전성능시험을 자기안전성능시험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기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검토 받고, 검토 결과에 따라 자기안전성 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의22(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 성능시험을 확인할 수 있다.
- 1.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자기안전성능 시험을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
- 2.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이 취소된 자동차 및 부품제 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다시 받기 위하여 자기안전성능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을 위한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 제40조의23(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법 제30조의 8제3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별표 5의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2.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시험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2. 시험인력 확보 관련 자료(UNECE/WP.29 등재기관은 생략할 수 있다)
- 3. 시험시설 확보 관련 자료(UNECE/WP.29 등재기관은 생략할 수 있다)
- 4. ISO 17020 또는 ISO 17025 인증서(UNECE/WP.29 등재기관은 생략할 수 있다)
- 5.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 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 2. 시험기관의 명칭
- 3. 시험기관의 주소
- 4. 시험항목 등 업무수행 범위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제2 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4서 식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능시험 시험기 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법 제30조의8제3항제 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이란 별표 5의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 검사 절차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8제4항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의 대상, 방법, 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수 있다.
-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대수 또는 판매동향
- 2. 전년도 실시된 안전성능시험, 지정기관안전성능시험 및 자기안전성 능시험의 현황
- 3. 전년도 시행된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등의 결과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 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 중 검사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시행한 때에는 적합성검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적합성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를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 3.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별지 제26 호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영 제8조의6의 경우 에 한한다)

제105조제2항 중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를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제150조제1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법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제150조의2제1항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40조의17 및 제40조의20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의 교부

별표 5의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의4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구동축전지의 경우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기시 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자동차의 외관도 1부
-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서 또는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영 제8조의 6의 경우에 한한다)
-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1부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에 관한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 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영 제8조의2제14호는 제외한다)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영 제8조의2제14호는 제외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	1. 법인 명청 및 주소의 번경을 증빙하는 서류 2. 대표자 성명의 번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번경(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증빙하는 서류 (영 제8조의2제14호는 제외한다)
	재 발급	1.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별지 제2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14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1부
-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서 또는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영 제8조의 6의 경우에 한한다)
-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1부

별지 제8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1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설 및 장비기준(제40조의24 관련)

1. 구동축전지

	시험장비	시험시설 기준					
시험항목	(시설)		자동차		이륜자동차		
	(12)	수량	규격	수량	규격		
과충전 · 과방전 · 과열방지 · 과전류	충 방 전 기 및 과충방 전기	1대 이상	1,000 V, 500 A, 2ch 이상	1대 이상	1,000 V, 500 A, 2ch 이하		
단락	단락시험기	1대 이상	단락기 내부저항 5 m Ω 이하	1대 이상	단락기 내부저항 5 mΩ 이하		
낙하	낙하시험기	1대 이상	낙하높이 4.9 m에 서 낙하시험 가능	1대 이상	낙하높이 1m에서 낙하시험 가능		
침수	침수시험기	1대 이상	염수제조기	1대 이상	염수제조기		
연소	연소시험기 (화재시험 챔버)	1대 이상	챔버 LPG공급 유량제어 (~) 화염온도 800~1,10 0℃	1대 이상	챔버 LPG공급 유량제어 (~) 화 염 온 도 800~1,100℃		
진동	진동시험기	1대 이상	수평판 가진력 200 kN	1대 이상	수평판 가진력 200 kN 이하		
열충격	열충격시험 기	1대 이상	고온부(50~150℃) 저온부(-50~10℃)	1대 이상	고온부(50~150℃) 저온부(-50~10℃)		
충격	기계적 충 격시험기	1대 이상	1,000 kg 이상의 중 량에 대해서 28 G 구 현				
압착	기계적 압 착시험기	1대 이상	구동축전지 측면부 직 접압착 100 kN의 압착하중				
단락 · 과충전 · 과방전 · 과열방지 · 과전류	방폭챔버	1대 이상	실온 ~ 100 ℃ 제 어 가능	1대 이상	실온 ~ 100 ℃ 제 어 가능		
연소	기타 장비 및 시설	각 1식 이 상	집진기, LPG 저장탱 크, 저수조 및 폐수조 등	각 1식 이상	집진기, LPG 저장탱 크, 저수조 및 폐수조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www.katro.or.kr(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기	다		처리기	간	즉시	
	제작자명				제작자등	록번호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호	·번호				
	주소									
	차명				형스	I				
ᆔ듸	차종				원동:	7				
자동차	검사신청대수	<u> </u>								
	차대번호내역	1								
71178	[] 최초안건	전검사	[] 계=	속안전검.	사 (제원	관리번호	:)	
검사구분	검사받을 장소	=								
「자동차관	리법」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위	와 같0	신청힙	나니다.	
							년	월		일
				신청인				(4.1	nd rc 🗠	ol)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1부				
	2. 자동차의 외관도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각 1부				
첨부서류	3.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	성능시험대			
	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동차제작증에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한 후 제출합니다)	행자가			
성능시험대행 자 확인사항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자만 해당)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정한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성능시험대 행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확인	→	안전검사	→	안전검시증 발급
신청인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17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5			
	대표자명		생년월일(또는 †	벜인등록번	호)		
신청인	전화번호						
	주소						
	명칭						
핵심장치	형식						
	성능시험대행자 ()						
시험기관							
시엄기판 구분	법 제30조의8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 ()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시설을	을 갖춘 자동차 및	부품제작	자등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8제1항·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19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의2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 안전성능시험 결과(법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려는 경우 에 한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서 및 제40조의21제2항에 따른 자기안전성능시험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결과 4.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의 안전성,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u> </u>			처리기간 30일	
	제작자명		제작지	ト 등록번호		_	
	대표자명			법인(/	나업자) 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지	- 연락처		
핵심장치	명칭						
	시험항목	시험장비명	제조	사	모델명	비고	_
시험시설							
및 장비							
	1						
	리법」제30조의 험 시험시설 확			법 시행	규칙 제40조의2	21제1항에 따라	라
					Ļ	년 월 9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	대행자귀하						
4 UNTER	5 EL MOIEURE	첨부서류				수수료	_
 사업사등목 시험장비 관 	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년 연자료	_				성능시험대형 자가 정한 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8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서

발급번호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اماتاما	대표자명			법인(사	업자) 등록번	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l.						
핵심장치	명칭						
	시험항목	시험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확인	결과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적합, [□부적합
.1-1.1.1						□적합, [□부적합
시험시설 및 장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J부석합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8제3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1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

가. 시험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전·후·좌·우 사진 나. 시험장비의 사양서(규격서), 교정성적서, 장비점검 및 관리이력대장 등 3. 시험장비 및 시설 설치장소 정보(시험시설 내/외부 사진, 시설 배치도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구분	신규 인증 []	변경 인증 []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전화번호	
	주소	
	명칭	
핵심 장치	형식	
	인증번호(제원관리번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17제4항·제40조의20제1항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직인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1부

210mm X 297mm(일반용지 120g/m²)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반	년호
	대표자명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전화번호		l	
	주소			
	명칭			
핵심장치	형식			
	제원관리번호			
변경내용				
변경인증 시험 항목 (해당시)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1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9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0제1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해당할 경우)	성능시험대행			
2. 변경 전•후 상세 제원 대비표	자가 정한 금			
3. 변경인증 상세 사유	액			
4. 변경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해당할 경우)				

유 의 사 항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한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 시 핵심장치 제원관리번호란에 '해당 없음'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반	<u> </u> 호
시원이	대표자명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전화번호			
	주소			
	명칭			
핵심장치	형식			
	제원관리번호			
				_
변경내용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17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선 필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 전•후 상세 제원 대비표	변경신고:
2. 변경신고 상세 사유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한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 시 핵심장치 제원관리번호란에 '해당 없음'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2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Designation of Safety Test Performance Institution)

접수번호(Rece	접수일(Date of rec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간 30일 (Processing Period 30 days)		
	기관명(Name of C	Corporate Entity)	ţ	법인(사업자)등록변	년호(Business F	Registration No.)	
NEIO	대표자 성명(Nam	e of Representative)	7	전화번호(Tel)			
신청인 (Applicant)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r	nail)					
	담당자 성명(Nam	e of Contact Person)	F	담당자 연락처(Pho	ne No. of Cont	act Person)	
핵심장치 (Key device)	명칭(Name)						
시험장비	시험항목 (Test Item)	시험장비명 (Test equipment name)	제 조 사 (M an ufa ctu rer)	모델명 (Model	- 1	비고 (Remarks)	
및 시설 (Test equipment and facility)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8제3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The applicant hereby seeks the designation of a safety performance test institution under Article 30-8 (3) and (7) of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Article 40-23 (2) of its Enforcement Rule.

년 월 일 (YYYY/MM/DD)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8제3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3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을 아래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The applicant below hereby authorizes the attorney-in-fact to apply for the designation of a safety performance test institution under Article 30-8 (3) and (7)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Article 40-23 (2) of its Enforcement Rule.

위임한 사람(기관) (Principal (institutions))

(서명 또는 인)(Signature)

위임받은 사람(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

(서명 또는 인)(Signature)

첨부서류(Attached Documents)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외국 시설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r a certified copy of corporation register book (In case of foreign facility, equivalent documents must be submitted))	수수료 없음

- 2. 시험인력 관련 자료 (Information on testing personnel) : UNECE/WP.29 등재기관은 제외
- 가.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At least 3 years of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 나. 시험인력 2명 이상(At least 2 test personnel)
- 3. 시험시설 관련 자료 (Information on testing facilities) : UNECE/WP.29 등재기관은 제외
- 가. 시험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가 포함된 사진 등

(Photo shows the name of test equipment, manufacturer, model, and serial No.)

- 나. 시험장비의 사양서(규격서), 교정성적서, 장비점검 및 관리이력대장 등
 - (Specification, calibration certificate, equipment inspection and maintenance log)
- 다. 시험장비 및 시설 설치장소 정보(시험시설 내/외부 사진, 시설 배치도 등)

(Information of the place where the test equipment and facilities are located (photos of in/outside of test facility, and layout)

- 4. ISO 17020 또는 ISO 17025 인증서(ISO 17020 or ISO 17025 Certification): UNECE/WP.29 등 재기관은 제외
- 5.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 UNECE/WP.29 등재기과은 제외

(Business regulations recording procedures, methods, etc. for conducting safety performance test)

- 6.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서
- (A certificate of relationship with the applicant (for a proxy application))

210mm×297mm[일반용지 plain paper 60g/m²]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

(Designation of safety performance test institution for an EV battery)

제 호(No.)														
	기관명(법인명) (Name of the institution)								법인(사업자)등록번호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신청인 (Applicant)	대표자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주소(Address)													
핵심장치등 (Key devices)	명칭(Name)													
	지동차 Vehide	진동 Vibration	열충격 Thermal shock	연소 Fire resistance	단락 External short dircuit	괴충전 Overdnarge	괴빙전 Over- discharge	괴열방지 Over- temperature	과전류 Over- current	침수 Water immersion	충격 Mechanical shook	압착 Mechanical integrity	낙하 Drop	
시험항목 (Test items)	이륜 자동차 Motor- cycle	진동 Vibration	열충격 Thermal shook	연소 Fire resistance	단락 External short circuit	과충전 Overdharge	과방전 Over- discharge	괴열방지 Over- temperature	과전류 Over- current	침수 Water resistance	낙하 Drop			

「자동차관리법」 제38조의8제3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3제3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8 (3) and (7)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Article 40-23 (3) and (5) of its Enforcement Rule, it is hereby designated as a safety performance test institution for an EV battery, as stated above.

년 월 일(YYY/MM/DD)

국토교통부장관

Min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직인 official seal

210mm×297mm[백상지wood-free paper(150g/m²)]

- 25 -

- 26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4서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Change of Designated contents of Safety Test Performance Institution)

접수번호(Rece	eipt Number)	접수일(Date of receip	t)	처리기간 15일 (Processing Period 15 days)			
	기관명(Name of Corp	orate Entity)	법인(사업자)등록번	İু ক্র(Business Registration No.)			
시원이	대표자 성명(Name o	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신청인 (Applicant)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담당자 성명(Name o	f Contact Person)	담당자 연락처(Phone No. of Contact Person)				
	(필요시 별지 사용)(Use the attachment if I	necessary)				
변경사항 (Changed items)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2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The applicant hereby seeks a change in the designated details as described above under Article 40-2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년 월 일 (YYYY/MM/DD)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8제3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3제4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번 검신점을 아래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The applicant below hereby authorizes the attorney-in-fact to apply for changes in the designated details of the safety performance test institution under Article 30-8 (3) and (7)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Article 40-23 (4) of its Enforcement Rule.

위임한 사람(기관) (Principal (institutions))

(서명 또는 인)(Signature)

위임받은 사람(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

(서명 또는 인)(Signature)

210mm×297mm[일반용지 plain paper 60g/m³]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1. 구동축전지

구분	항목		제원
일반사항	제작자		
	생산지		
(팩)	형 식		
	셀 제작자		
구동축전지	셀 형태		
(셀)	셀 주요원료		
()	셀 크기	(mm)	
	셀 용량	(Ah)	
구동축전지	모듈 제작자		
(모듈)	모듈 정격 전압	(V)	
(—=/	모듈 정격 용량	(Ah)	
	구 조		
구동축전지	형 상		
(팩)의 외관	크 기	(mm)	
	케이스		
그도초되기	정격 전압	(V)	
구동축전지 (팩)의 전기	작동 전압	(V)	
(학/의 전기 규격	정격 용량	(Ah)	
117	최대 전류	(A)	
가스 조합률		(%)	
75 5	탑재 시 개요, 설		
자동차 탑	치, 또는 도면		
재시 사항	장착 구분		
열관리 형식			
전자적 제어	<u></u> 조건		
탑재될 차종			

유 의 사 항

- 1. 생산지란은 구동축전지가 생산되는 생산지 주소를 기재합니다.(복수 기재 가능)
- 2. 셀 형태란은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등을 기재합니다.
- 3. 셀 주요원료란은 셀의 주요 원료 구성(니켈·코발트·망간(NCM), 인산철(LFP) 등) 및 비율을 기재합니다.
- 4. 구동축전지(팩)의 와관/형상란은 셀 개수, 연결모드 등을 기재합니다.
- 5. 구동축전지(팩)의 외관/케이스란은 구조, 재질, 크기 등을 기재합니다.
- 6. 장착 구분란은 고정식 또는 교환식을 기재합니다.
- 7. 열관리 형식란은 수냉식, 공랭식, 복합식 등으로 기재합니다.
- 8. 탑재될 차종란은 승용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기재합니다.(복수 기재 가능)
- 9.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붙임자료 참조'로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
- 10.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기재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8서식]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핵심장치등 제원관리번호통보서							
통	보 서 발 급 번 호						
7	세원관리번호						
제	제 작 자 명			7	전 화 번 호		
^៕ 작	제작자등록번호						
ı	주 소						
자	사 업 장 소 재 지						
핵	명 칭						
심	형 식						
장	생 산 지						
치	셀 제 작 자						
	「자동차관리법」 제3	0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	규칙 제40조의	위17제5항·제40	
조	:의20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히	나 여 위와	같이 통	보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학	행자 인	
붙	임 : 핵심장치등의 저	원표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 서식]

자동차점검 · 정비명세서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	주형	행거리		km
소유자	등록연월일			점검 • 의뢰'									
	사업자등록 번호			정비업 번:									
정비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점검 • 정비 완료일자			출고역	일자	정비책임자 ((٨	1명 또는 인)				
점검	• 정비내역				추기	정비동	등의여부		[]동	의	[]=	부동의	4
		작업내용					부	품				공임	
		4 8 41 8			구	분	수량	Ę	단가 계				
부품		공임		소계		,	부가2 세				총.	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 1. 정비업자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정비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
-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 나. 재제조품: B
 -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인증대체부품: D
 - 마. 수입부품: F
-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동축전지를 교환한 경우에는 작업내용란에 구동축전지명과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³]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
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	
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u>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핵심
	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영 제
	8조의6의 경우에 한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제원의 통보) ①자동차제	제39조(제원의 통보) ①
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	
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	
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	
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	
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 1. 2. (생 략)
- 제원표

4. <현행 제3호>

② ~ ④ (생 략)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 2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 품제작자등 등록 • 변경 및 등록 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생 략)
- 2.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 의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 약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 류

- 1.·2. (현행과 같음)
-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3.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핵심 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 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영 제8조의6의 경우에 한한 다)
 - 4.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①	

1. (현행과 같음)

류(영 제8조의2제14호는 제외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 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②·③ (생 략) <신 설> 한다)

3. -----

----- <u>서류(영 제8</u> 조의2제14호는 제외하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17(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0조의7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동축전지(셀)와 관련된 다

<u>음 각 목의 사항</u>

<u>가. 셀 제작자</u>

나. 셀 형태

다. 셀 주요원료

<u>라. 셀 크기(mm)</u>

<u>마. 셀 용량(Ah)</u>

2. 구동축전지(팩)의 전기규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격 전압(V)

나. 작동 전압(V)

<u>다. 정격 용량(Ah)</u>

라. 최대 전류(A)

3. 열관리 형식

4. 전자적 제어 조건

②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핵심장치 또는 부품(이하 "핵심 장치등"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10서 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일반 사항(팩)을 제외한 제원 중 제1 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 의 안전성 변경신고서를 작성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 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 하여야 하다. 1. 변경인증의 경우: 별지 제24 호의9서식의 안전성인증서

2. 변경신고 및 제4항의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제원관

리번호통보서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변경 인증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제5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 적합여부 확인의 방법 및 결 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40조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 인증 표시) ① 법 제30조의7제3 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인증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신 설>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 할 것

2.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안전성 인증 및 안전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 에 따라 핵심장치등에 대하여 자동차안전기준등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 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핵심장 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를 작 성하고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첨부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 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와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국

<신 설>

<u>토교통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능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신청 시 법 제30 조의8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 관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이하 "지정기관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30조의8제3항제2 호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 자등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이 하 "자기안전성능시험"이라 한 다)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안전성능시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40조의 21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시험시 설 확인서 및 자기안전성능시험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 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u><신 설></u>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접수, 제40조의17에 따른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제40조의20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적합여부 확인과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및 인증서의 교부 등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인증 및안전성능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안전성 인증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30조의8제1항 후 단에 따라 핵심장치등이 자동차 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 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 이라 한다)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 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4호의9 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핵심장치등의 제원관 리번호만 부여하고 별지 제26호 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 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40조의19제3항에 따라 성 능시험대행자는 핵심장치등의

(2) 제40조의19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는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5호의 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의 부여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등) ① 법 제30조의8제3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갈음하여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자기안전성능시험을 최초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험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시설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이 별표 5의10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험시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안전성능시험을 자기안전성능시험을 자기안전성능시험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기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검토 받고, 검토결과에 따라 자기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안 전성능시험 시험시설에 대한 확 인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2(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능시험 확인) ① 성능시험대행 자는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1.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자 기안전성능시험을 최초로 실 시하는 경우
- 2.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이 취소된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 증을 다시 받기 위하여 자기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을 위한 절차 방법 및 그
- 확인을 위한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 제40조의23(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법 제30조의8제3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별표 5의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u>시험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u> 것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핵심 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 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 인등기부등본
- 2. 시험인력 확보 관련 자료(UN ECE/WP.29 등재기관은 생략 할 수 있다)
- 3. 시험시설 확보 관련 자료(UN ECE/WP.29 등재기관은 생략할 수 있다)
- 4. ISO 17020 또는 ISO 17025인증서(UNECE/WP.29 등재기관은 생략할 수 있다)
- 5.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 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u><신 설></u>

<u>는 자료</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
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
<u>넷</u>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u>다.</u>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시험기관의 명칭
3. 시험기관의 주소
4. 시험항목 등 업무수행 범위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
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안전성능시
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
청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u>야 한다.</u>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		
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을		
병우에는 별지 제24호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험기관 지정서를 발급		
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		
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u>및 지정번호</u>		
 관의 명칭		
관의 주소		
목 등 업무수행 범위		
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		
부터 제4호까지의 사		
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4서식의 안전성능시		
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		
<u> </u>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 , -		

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안전성능 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 <신 설> 능시험 시험시설) 법 제30조의8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이 라 별표 5의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 <신 설>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안전성 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

검사 절차 등) ① 성능시험대행 자가 법 제30조의8제4항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 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성능 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의 대 상, 방법, 인력 및 비용 등이 포 함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 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 완하게 할 수 있다.

-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적합성검사 연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대 수 또는 판매동향
- 2. 전년도 실시된 안전성능시험. 지정기관안전성능시험 및 자 기안전성능시험의 현황
- 적합성검사 등의 결과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성능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제 3. 전년도 시행된 핵심장치등의 등) ①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 사 연간계획 중 검사대상 및 내 용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 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및 부 품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 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 사를 시행한 때에는 적합성검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적합성검사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다.

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류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

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
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
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
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
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
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
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 차 제원표
- 2. (생 략)
- 3.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

 선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는 <u>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u> 규정을 준용한다.

,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
<u>서</u>
2. (현행과 같음)
이 버리 레이4구시아시시시 테기
3. <u>별지 제24호의9서식의 핵심</u>
3. <u>벌시 세24호의9서식의 핵심</u> <u>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u>
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
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 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 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영 제8조의6의 경우에 한한
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 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영 제8조의6의 경우에 한한 다)
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 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영 제8조의6의 경우에 한한 다) 4.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
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또는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핵심장 치등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영 제8조의6의 경우에 한한 다) 4.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 차 제원표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	
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4. 법 제30조의7 및 제30조</u>
	의8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
	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
산처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산처리) ①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1. ~ 1의5. (생 략)	1. ~ 1의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6. 제40조의17 및 제40조의2
	0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
	성인증서의 교부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